



제 43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
■ 안상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160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벌칙 강화	2
2. 과실범 처벌 규정 신설	7
3. 부칙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안상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12.
3. 회 부 일 : 2025.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그런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등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업자 등이 이를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과실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의 경우에도 벌칙을 강화하여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개정 및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한 벌칙 강화

개정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 표시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¹⁾을 위반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여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제14조(벌칙) ① ----- ----- -----3억원----- ----- -----.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 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현행법 제14조제1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금지규정인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상습범에 대한 형량 하한과 가중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벌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시장 내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고 소비자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수를 살펴보면, 매년 1,500개소 이상의 업체가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고 있음.

【 2021년~2024년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 수 】

(단위: 개소)

연도	2021	2022	2023	2024
거짓표시	1,634	1,637	1,745	1,645

※ 자료: 농식품부 제출

한편, 같은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거짓 표시) 최종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대부분의 처분이 벌금형으로,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은 측면이 있음.

【2021~2024년 원산지 표시 위반(거짓표시) 최종 처분결과】

(단위: 건)

연도	2021	2022	2023	2024
벌금형	1,181	1,135	1,208	977
징역·집행유예	60	68	37	12
계	1,241	1,203	1,245	989

※ 주: 2024년 결과의 경우 재판 진행에 따라 아직 최종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이 존재함

※ 자료: 농식품부 제출

위와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따른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에 따른 부담을 강화하여 제도를 준수할 유인을 증가시키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유사 입법례의 벌금형 상한 수준과 비교하여 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²⁾에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竝科)할 수 있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개정안이 벌금형의 상한을 3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은 유사 입법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강한 벌칙을 도입하는 것이므로, 유사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징역형의 상한인 7년은 유지한 채로 벌금형의 상한만 3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지침인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45조에서는 벌금형과 자유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자유형의 기간 1년에 벌금액 1천만원이 상응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자유형의 기간에 따른 벌금액 기준】

징역	벌금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 자료: 국회사무처지침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 제45조제3항제2호

셋째, 최근 5년(2021년~2025년 11월)간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벌금형 처분 현황을 보면, 현행과 같은 1억원의 벌금형 상한 하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인 1천만원 초과 벌금형이 부과된 사례는 77건(1.6%)으로서 드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1년~2025년 11월 금액 구간별 벌금형 건수와 비율】

(단위: 건, %)

금액 구간	100만원 이하	101만원 ~ 500만원	501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초과	계
건수	2,788	1,673	198	77	4,736
비율	58.9	35.3	4.2	1.6	100.0

※ 자료: 농식품부 제출

넷째,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하여 형벌 외에도 과징금 부과(제6조의2), 위반업체 공표(제9조), 위반자 의무교육(제9조의2) 등 위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거나 명예·신뢰도를 하락시키는 등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제재수단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더라도 행정적 제재수단의 적용 기준을 정교화하고 집행력을 강화한다면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일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제14조제1항의 벌금 상한이 상습범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같은 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인 1억 5천만원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나타남.

현행법 제14조제2항은 상대적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상습범에 대하여 강화된 벌칙을 적용하려는 취지의 규정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서 상습범에 대한 벌금 상한 역시 상향 조정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과실범 처벌 규정 신설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실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³⁾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현행 원산지표시법 상 원산지 거짓 표시 등에 대하여는 과실범의 처벌이 불가능함.

이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을 회피하고 원산지 표시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한 거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과실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원산지 표

3)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시제도 위반자가 과실을 주장하여 처벌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형법」에서 과실범을 법률로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원산지 표시제도에 따른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과실범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현재 「대외무역법」에서 중대한 과실로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무역거래자 등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⁴⁾ 규정하는 사항이 개정안의 과실범 처벌 규정과 유사해 보일 수 있으나,

수출·수입 등 국외거래 단계를 규율하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신뢰 문제를 넘어 국가의 신용 문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유통 단계를 규율하는 원산지 표시법과는 보호법익의 중대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4) 「대외무역법」

제56조(과실범) 중대한 과실로 제5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2. 제33조제4항 각 호(제3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④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둘째, 과실범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과징금, 위반업체 공표, 위반자 의무교육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타 입법례와 비교할 때 원산지 표시는 과실범 처벌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정안의 수용이 곤란하다는 의견임.

3. 부칙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도록 하는 것임(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안은 현행에 비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상향 규정하는 한편, 과실범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개정규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집행기관이 관련 의무 이행 및 단속 체계를 사전에 정비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6개월의 시행 준비 기간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경우,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명확히 하는 자구정리가 필요함.

한편,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는 헌법 제13조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고려하여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6